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-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관내 공공기관의 청사에 국기 게양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금천구민의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- 공공기관 등의 국기 게양 신설 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대한민국 국기법」 및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연중게양 의무와 국기 게양 규격 조항을 반영하고
- 국기게양대 설치 대상을 유사기관까지 확대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이와 관련하여 관내 공공기관 청사 등에 게시된 국기가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서 정한 규격대로 바르게 설치 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